

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. 다만,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. 가. ~ 사. (생략) 아. 「약사법」(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·남용우려 의약품)에 한정한다. 다만,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) 2.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,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 신고하는 물품. 다만,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	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제19조 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-----(<u>식품의약품안전처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오·남용우려 의약품</u>-----) -----) 2. ----- ----- <u>별표 5(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)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</u> ----- -----.	■ 조문 정비 ■ 오·남용우려 의약품 지정 근거규정 명시 ■ 조문 정비

현행	개정안	비고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<u>부칙 (2026. 7. 16. 관세청고시 제2026-46호)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u> <u>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	■ 부칙 신설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
【별표 1】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(생략) 나. (생략) (1) (생략) (2)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	【별표 1】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(1) (현행과 같음) (2) ----- -- : 별표 1의2 참조	■ 조문 명확화												
【별표 2】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<table>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<tr><td>(12) 「외국환거래법」 해당물품</td><td> ○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○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(변경)신고서 </td></tr><tr><td>(1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<td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</u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 </td></tr>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2) 「외국환거래법」 해당물품	○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○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(변경)신고서	(1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</u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	【별표 2】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<table>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<tr><td>(12) <u>< 삭제 ></u></td><td><u>< 삭제 ></u></td></tr><tr><td>(1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<td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또는 제한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 </td></tr>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2) <u>< 삭제 ></u>	<u>< 삭제 ></u>	(1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또는 제한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	■ 세관장확인대상 제외 법령 반영 ■ 타법령(화학물질관리법)개정으로 용어 및 구비요건 변경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
(12) 「외국환거래법」 해당물품	○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○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(변경)신고서													
(1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</u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유독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
(12) <u>< 삭제 ></u>	<u>< 삭제 ></u>													
(14) 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제한물질 수입(변경)허가증 또는 제한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 ○ 유역(지방)환경청장의 <u>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(변경)신고증</u>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
(25) 「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 (가) (생략) (나) 시험용 의료기기 등(시험용, 자가사용용, 구호용 등 <u>의료기기법 시행규칙</u>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) (다) (생략) (30) 「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 중 생물작용제, 독소 (45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해당 물품 (가) 삼상유도전동기 <신설>	(25) 「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 (가) (현행과 같음) (나) 시험용 의료기기 등(시험용, 자가사용용, 구호용 등 <u>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</u>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) (다) (현행과 같음) (30) 「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 중 생물작용제, 독소 (45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해당 물품 (가) 삼상유도전동기 <u>(나) 공기압축기</u> <u>(다) 펌프</u> <u>(46)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</u> 해당 물품 <u>(가) 의료기기</u> <u>(나) 시험용 의료기기 등(시험용, 자가사용용, 구호용 등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)</u>	○ (현행과 같음) ○ <u>산업통상부장관</u>의 수입허가서 ○ (현행과 같음) ○ <u>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</u> ○ <u>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</u>

- '25. 10. 1.
정부조직개편에
따라 부처명칭 변경
- 세관장확인대상
추가 품목 반영
- 「체외진단의료기기
법」 반영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
나. (생략) (1) (생략) (2)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	나. (현행과 같음) (1) (현행과 같음) (2) ----- -- : <u>별표 2의2 참조</u>	■ 조문 명확화																				
【별표 3】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. 수입물품 <table>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<tr><td><신설></td><td><신설></td></tr><tr><td><신설></td><td><신설></td></tr></table> 나. 수출물품 <table>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<tr><td>(8) 「문화재보호법」 해당물품</td><td>○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재 확인 신청</td></tr>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8) 「문화재보호법」 해당물품	○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재 확인 신청	【별표 3】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. 수입물품 <table>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<tr><td>(30)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</td><td>○ 표준통관예정보고 ○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</td></tr><tr><td>(3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</td><td>○ 수입검역신청</td></tr></table> 나. 수출물품 <table><tr>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<th>구비요건</th></tr><tr><td>(8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</td><td>○ 문화유산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</td></tr>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30)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	○ 표준통관예정보고 ○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	(3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	○ 수입검역신청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8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	○ 문화유산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	■ 법령 및 구비요건 추가 ■ 법령명 등 현행화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								
(8) 「문화재보호법」 해당물품	○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재 확인 신청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								
(30)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해당 물품	○ 표준통관예정보고 ○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																					
(31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	○ 수입검역신청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								
(8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해당 물품	○ 문화유산 국외반출허가 신청 또는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																					